

## 지정토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 국민을 위한 최선 진료 모색해야



전민용 공동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즉,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의 일차적인 목적은 구강보건진료소비자인 국민이 필요할 때 필요한 구강보건진료를 소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활용하여 국민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시행규칙안’은 치과의사전문의를 양성하는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성된 전문의의 수는 전문의의 활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이 법안에 의해 적정수의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기도 어렵고, 적정수의 전문의를 배출하기도 어려운 중대한 결함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 검토내용

### 1.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 지정기준을 전면재조정 하여야 한다

#### 사유

이번 법안에 의하면,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구강진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의 진료과가 설치되고 각과에 전속지도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참고1). 이러한 제안은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참고2)에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의 5개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인턴(intern) 제도와 연관되어 있어, 몇 개 전문과목이 임상진료과정에서 흔히 부딪치게 될 다빈도진료를 구성하는 ‘기본적 주요과목’이 될 것인가에 따라 전문과목의 최소 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따라 수련병원의 수가 결정되면 이는 곧 전공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관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라는 조건은 단분히 임의적이며 어떤 과목이 기본적 주요과목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결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턴교육과정이 수련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 교육과정 표준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하여, 표준화된 예비 치과의사전문의를 양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기준의 규정인 5개과보다 후퇴한 기준으로 설정될 경우,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치과병원 수는 증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의 증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즉,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잘못 결정되면, 치과의사전문의의 질과 양 관리 모두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질과 양 관리의 실패는 결국 구강진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구강진료를 소비하는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라는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표준화된 양질의 치과의사전문의 양성이라는 측면과, 바람직한 전문치의제도와 구강진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 예상 결과

-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주요과목의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화된 예비 치과의사전문의를 양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라는 조건은 다분히 임의적이며 어떤 과목이 기본적 주요과목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결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정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턴교육과정이 수련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 교육과정 표준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표준화된 예비 치과의사전문의를 양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 수련지정을 받는 진료과가 병원의 경영적인 입장 만이 반영되어 고수입이 보장되는 특정진료과목에만 한정될 것이다.
  - 많은 보건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의 수련과정인 레지던트 정원이 진료수요를 고려한 진료인력의 적정구성에 기초하여 책정되지 않고 병원의 경영적인 입장에서 수련병원이 값싼 전공의 인력을 활용하는 틀로 짜여지

고 있으며, 그 결과 1990년 이후 인턴정원이 의과대학 졸업생 수 보다 높게 책정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치밀한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조절계획에 의거하여 전공의 선발인원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양방의료계와 동일한 전철을 맟을 수 밖에 없다.

- 2000년 5-6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82개의 조사병원 가운데 수련 진료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68개, 치과교정과를 60개, 치과보철과를 52개의 병원이 지정하고 있었고, 치주과 31개, 치과보존과 25개, 소아치과 21개이었으며,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2개, 구강내과 11개, 예방치과 5개, 구강병리과 3개 등이어서, 수입에 따른 과별 편중현상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다수의 치과병원이 손쉽게 수련병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예비 전문의인 전공의의 숫자를 감소시키지 못하여, 과잉의 전문의가 배출될 소지를 남길 것이다.
- 적정 치과의사전문의의 비율은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구강질환의 유병률과 일반치과 의사에 의한 환자의뢰관계를 토대로 조정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구강질환이 정의되어 조사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일반치의에 의해 의뢰되는 환자의 비율에 의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치과의원의 일반치과의사가 연간 의뢰하는 환자빈도는 약 50.5건으로, 한달 평균 4건 정도를 의뢰하고 있어서, 1인의 전문의가 연간 300일을 근무하고 1일 8건의 의뢰환자를 소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약 360명의 전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조사당시 전체 치과의사 수의 약 2.1%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설문조사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일부 의뢰건수가 누락될 수 있고, 의뢰환자의 지역별 편차와 전문과목별 최소 필요인력 및 구강보건행정 전문 치과의사 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5배의 범위를 가

정하더라도, 4.2-10.5%이었다. 그리고, 주요 국가별 전체 치과의사대비 전문의의 비율은 미국 6.2%, 캐나다 11.5%, 독일 5.7%, 호주 7.8%, 덴마크 3.3%, 그리스 4.0% 등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실시하는 과반수 이상의 국가들이 10%이내의 전문의 비율을 유지하였지만, 소수의 국가에서는 30% 이상의 전문치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의의 비율이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현상은 각국의 구강 진료전달체계내에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담당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의와 전문의의 업무 범위가 분명히 구분되고, 바람직한 환자의뢰체계를 지닌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제도 시행과 더불어 바람직한 환자의뢰체계와 구강보건진료 전달체계가 확립된다면, 적정 전문치의의 상대 비율은 1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회원들의 총의를 물어 전문의 배출정원을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과대학 졸업생의 8% 이내로 규정하여, 적정비율의 전문의를 확보하도록 결의한바 있다.

- 2000년 5-6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당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115개였고 실태조사에 응한 수련병원이 82개였는데,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인 44개의 수련 병원이 ‘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치과병원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대략 200개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치과병원의 상당수가 수련병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0년의 경우, 800여명의 면허취득자 중 325명이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어서, 면허취득자의 40% 이상이 수련과정을 밟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적정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인원의 최소 3-4배 이상이 매년 수련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적정인원의 4배 이상이 수련교육과정을 이수 할 경우, 8%이내의 소수정예를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원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적정인원 보다 월등히 많은 다수의 치과의사가 응시자격을 얻을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 수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대평가를 통한 엄격한 시험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수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겠지만, 자격시험의 형식적 특성상 절대평가를 하도록 규정받게 된다. 실제로 시행규칙안 제12조(시험과목 및 방법) 제5항(참고 3)에 의하면, 절대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100%에 육박하는 (양방)전문의자격시험 합격률을 볼 때, 자격시험을 통한 전문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검토된다.

## 수정안

-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 진료과 : 현행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3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와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등 6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인턴 수련치과병원에 개설되어 있어야 할 최소 진료과를 선정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치과분야의 특성상 관리되는 악안면 조직의 성질에 기초할 필요성이 있다.
- 구강진료의 주된 대상은 치아와 악골 등의 경조직과 더불어, 치주조직과 안면의 연조직이다. 치과의사전문의의 10개과 각각의 전문과정에 입문하기 이전에 이들 진료대상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진료과인 치과보존과, 치주과,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인턴과정은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유치와 성장중인 악안면을 대상으로 소아치과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치과 분야의 특성상 손상된 구강악안면 조직기관의 재활은 주요분야일 수 밖에 없으므로, 치과보철과 역시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치과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 2. 수련치과병원의 병상수 기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 사 유

이번 법안에 의하면, 인턴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구강진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수련병원에 한해서 5병상이상이 있도록 규정하였다(참고1). 구강악안면외과가 개설되어 있고 5병상이 없는 치과병원에서 타 진료과가 3개이상 개설되어 있으면,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타 진료과의 수련치과병원으로의 지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예상 결과

-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악안면외과를 개설하고, 병상이 없으면서 타 진료과를 3개이상 개설한 연후에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는 경우가 빈발할 것이다.

- 2000년 5-6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당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115개였고 실태조사에 응한 수련병원이 82개였는데,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인 44개의 수련병원이 '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병상수 5개 이상을 만족하는 병원은 20개에 불과하였다. 즉, 24개의 병원은 단서조항이 없다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나, 단서조항으로 인해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정안

-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 병상수 : '구강악

안면외과 수련병원에 한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 한다.

### [참 고 1]

시행규칙 제5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레지던트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별표1

####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 1. 공통기준

구 분	기 준
진 료 과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3개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속지도 전문의의 수	각 과 1인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수 및 환자진료 실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li>허가병상수 5병상 이상 (구강악안면외과 수련병원에 한한다)</li><li>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인 이상</li></ol>
시설 및 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치과용 유니트-의자 7대를 기준으로 하여 4대이상 설치</li><li>구내방사선촬영기 1대 및 구외방사선촬영기 1대이상 설치</li><li>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약국, 치과기공실, 강의실 또는 회의실, 도서실 및 종양소독실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li></ol>

### [참 고 2]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제1항 :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대한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항 :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참 고 3]

#### 시행규칙안 제12조 (시험과목 및 방법)

제5항 ;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